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51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이재정·정일영·김영호

박주민 · 오영환 · 민병덕

강득구・김민기・이수진비

윤재갑 · 강선우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년의 취업·결혼·주거 및 임신·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임.

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30대까지의 후보자 현황을 보면,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,101명 중 6. 3%인 69명에 그치고 있음.

이에 39세 이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 후 기탁금 전액을 반환 받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,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는 득표기준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향함으로써,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제1호가목 중 "100분의 15"를 "100분의 15(39세 이하인 후보자는 100분의 10)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"를 "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(39세 이하인 후보자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)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탁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 관	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
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	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	
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	
탁자에게 반환한다. 이 경우 반	
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	
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	
한다.	
1.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	1
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	
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	
거	_
가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	가
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	
의 <u>100분의 15</u> 이상을 득	<u>100분의 15(39세</u>
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	이하인 후보자는 100분의
्रो	<u>10)</u>
	_
나.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	나
<u>100분의 10 이상 100분의</u>	<u>100분의 10 이상 100</u>
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	분의 15(39세 이하인 후보
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	<u>자는 100분의 5 이상 100</u>
해당하는 금액	분의 10)

다. (생 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